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·판매점 관리·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99호, 2026. 3. 31. 공포, 2026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·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함(안 제37조의13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전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13(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의 기준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

법 제32조의4제9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최근 6개월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의 건수가 같은 기간 동안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체결한 전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건수의 1만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,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사전승낙을 철회해야 한다.

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승낙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사전승낙 철회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승낙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 또는 사전승낙을 철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7조의13(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의 기준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9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최근 6개월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의 건수가 같은 기간 동안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체결한 전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건수의 1만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,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사전승낙을 철회해야 한다.</u> <u>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승낙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사전승낙 철회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.</u>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승낙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 또는 사전승낙을 철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654